

캘리포니아 법이 귀하를 도울 수 있 습니다

한 가구의 일원이자 임차인으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또는 의존상태 성인 학대의 피해자이고,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 떠나고자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이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가구의 일원이란 임차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족 모두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귀하, 즉 임차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HERA

HERA
주택 및 경제적 권리 옹호단체

연락처:

(510) 271-8443

내선번호. 300

inquiries@heraca.org

www.heraca.org

P.O. Box 29435

Oakland, CA 94604



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여성 및 소녀 지 위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nd Girls)의 협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귀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입니까?

가해자에 대하여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까?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가해자가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않는 경우 집안의 자물쇠를 교체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귀하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임이 명시된 법원 명령/경찰 신고서 사본을 증빙하여 자물쇠 교체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자물쇠를 바꿔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경찰 신고서가 180일 이상 경과된 것이면 안 됩니다.

귀하의 권리:

서면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임대인이 자물쇠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물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물쇠는 이전 자물쇠와 품질이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복사한 열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자물쇠 변경 후 24시간 이내에 이 변경 사실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자물쇠는 "전문가적 방식"으로 교체되어야 하기에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전문 업체의 작업 방식과 유사하게 교체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자물쇠를 교체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에 자물쇠를 교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물쇠 교체 서면 요청 및 귀하가 가정폭력, 성폭행 및 스토킹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법원 명령/경찰 신고서 사본을 제공한 경우 자물쇠를 교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가해자와 함께 거주 중에도 자물쇠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

캘리포니아 민법 제1941.6조에 따라 귀하는 여전히 자물쇠를 교체하여 가해자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자물쇠 교체 서면 요청서를 제공할 시 가해자가 귀하의 근방에 올 수 없으며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법원 명령 사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은 180일이 경과된 것일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임대인이 24시간 내에 자물쇠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마치 가해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처럼 직접 자물쇠를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집 밖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차 계약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귀하가 임대료 전액을 부담할 금전적 책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